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 전화(02)6350-6560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 / 팀원 이승아 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3205호

시행일자 2026. 3. 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6. 2. 23. ~ 3. 1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 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, 2026년 2월 23일 ~ 3월 1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1	2026.02.23.	[고시아님]	「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」 지침 개정 안내 ○2차 연도 성과지표 신설 등
2	2026.02.23.	제2026-39호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○호스피스 제도 활성화 및 보상강화를 위해 의료환경 변화, 임상현실을 고려한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수가 등 인상 ○시행일: 2026.3.1.
3	2026.02.23.	제2026-38호	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안 ○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·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○시행일: 2026.2.23.(고시발령일)
4	2026.02.25.	제2026-40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고시 안내 ○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○시행일: 2026.3.1.(단,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확인 필요)
5	2026.02.25.	제2026-42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 ○총 5항목 (신설1, 변경4) : 유전성 혈관부종 예방 약제인 'Lanadelumab 주사제(품명 :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)의 급여기준 신설 등 ○시행일: 2026.3.1.
6	2026.02.25.	제2026-43호	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 ○별표 8 제1호 중 구분코드 MT072 개정 ○시행일: 2026.3.1.
7	2026.02.26.	제2026-44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○[별표2] 제1호가목 중, '수술 중 방사선치료'란의 본인부담률·적용일· 평가원료차수 변경 등 ○시행일: 2026.3.1.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8	2026.02.26.	제2026-45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'응고기능기본검사-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(간이검사)'의 급여기준란 삭제 등 ○시행일: 2026.3.1.
9	2026.02.26.	제2026-49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형광동소교잡반응 세부검사항목(IGK/IGL gene 동시) 신설 등 ○시행일: 2026.3.1.
10	2026.02.26.	제2026-46호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○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[혈액질환검사] 누-100 응고기능 기본검사 거.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-간이검사란 삭제 등 ○시행일: 2026.3.1.
11	2026.02.26.	제2026-50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○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○시행일: 2026.3.1.
12	2026.02.26.	제2026-51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"MACROPLASTIQUE LUBRICANT GEL" 및 "MACROPLASTIQUE ENDOSCOPIC NEEDLE"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급여기준 개정 등 ○시행일: 2026.3.1.
13	2026.02.26.	제2026-52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○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용 치료재료 선별급여 80% 적용 ○시행일: 2026.3.1.
14	2026.02.27.	심평원 공고 제2026-50호	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○세부 내용 게시물 내 붙임파일 참고 ○시행일: 2026.3.1.
15	2026.02.27.	심평원 공고 제2026-51호	「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개정-공고 안내 ○Risdiplam 경구제 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) → Risdiplam 경구제 (품명: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) 명칭 변경 등 ○시행일: 2026.3.1.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<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>. 끝.

대한의사협회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(각과개원의협의회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, 대한전공의협의회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